

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제안이유

불법드론 무력화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파차단장치의 제조·수입·판매 인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(시행 '20. 12.10)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제조·수입·판매인가신청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한 법정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전파차단장치의 제조·수입·판매인가신청서 서식 신설(안 제17조의2, 별지 제43호의2 서식)

- 법 제29조제5항 등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·수입·판매인가신청서를 별지 제43호의2서식으로 신설

부령 제 호

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전파차단장치 인가신청서) 법 제29조제5항 및 영 제53조의
2제1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·수입·판매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
3호의2서식과 같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7조의2(전파차단장치 인가신</u> <u>청서) 법 제29조제5항 및 영 제</u> <u>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파차단</u> <u>장치의 제조·수입·판매인가신</u> <u>청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과</u> <u>같다.</u>

전파차단장치 ([]제조 []수입 []판매) 인가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고,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45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법인명(성명)		법인등록번호(생년월일)	
	상호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(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)			
	연락처			

① 인가신청목적	
② 명칭	
③ 제조자명	
④ 수량	
⑤ 제조·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	

「전파법」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([]제조 []수입 []판매) 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직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귀하

중앙전파관리소장

제출서류	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 관련 자료 계통도(차단방법, 동작원리, 부가설비 등을 망라하여 작성) 제조·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※ 신청시 지참물 : 신청자(법인인 경우 담당자)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사업자등록증(개인사업자)	- 4 -

(뒤 쪽)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방법

① 제①란 : 인가 신청 목적이 전파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와 전파차단 대상이 나타나도록 기재합니다.

(예시 :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를 위한 드론 대상 휴대용 전파차단장치 제조 및 판매)

② 제②란 : 전파차단장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
③ 인가신청 전파차단장치가 다수일 경우 '①~⑤' 부분은 별지(양식 동일)로 제출합니다.

④ 동일한 전파차단장치라도 발주처가 다른 경우 신규 인가신청이 필요합니다.

처리절차

